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열 의원)

의안 번호	489
----------	-----

발의연월일: 2025년 10월 14일

발 의 자 : 이창열 의원

찬 성 자 : 박춘희, 심현정, 이은미 의원

1.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
- 나. 제10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삭제하고 안 제10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신설
 - 기존 고령자 표시 스티커 조항을 삭제하고, 표시 스티커 제작·배부를 포함한 포괄적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안전 시설 정비,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확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교통안전법」
- 나. 예산조치 : 불임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5. 9. 29. ~ 2025. 10. 13.(15일간), 아래 표 참조

조례안(의회안)	수정안(안전교통과)	사유	의회 의견
제2조제4호 신설(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정의)	조례안 동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구체적인 장치의 범위와 기준은 추후 하위 지침(시행규칙·내부 지침 등)에서 명확히 할 예정.	
제10조 개정(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삭제 → 교통사고 예방사업 신설)	조례안 동의	기존의 단일 스티커 지원 조항을 포괄적 안전대책으로 확대한 점은 타당함. 특히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 교통안전 시설 정비 등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 확보가 가능하여 긍정적임. 다만, 사업 시행 시 예산 확보 및 타 교통안전 사업과의 연계 필요.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차선 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차선 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u></p>
<p><u>제10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u> <u>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u></p> <p><u>②</u> <u>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u></p>	<p><u>제10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u></p> <p><u>1.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배부</u></p> <p><u>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u></p> <p><u>3.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u></p> <p><u>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 나. (생략)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 차. (생략)
3. ~ 7. (생략)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2조제4호(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정의 신설), 제10조(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신설)에 따른 스티커 제작·배부, 교통안전 시설 정비,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 등 사업 추진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 조례안 시행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스티커 제작·배부, 시설 보완, 보조장치 지원 시범사업 등을 합산해도 연평균 약 5천만 원 미만으로 추계됨.
- 따라서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대신 본 사유서를 제출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연락처	(033) 330 - 2019